

남미시장 교역 활성화를 위한 중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Arbitration for Promoting Trade in the
South American Market

안태건*

Tae-Kun Ahn

김성룡**

Sung-Ryong Kim

〈목 차〉

- I. 서 론
- II. 남미시장 교역 현황
- III. 교역 증대요인 실증 분석
- IV. 교역 활성화를 위한 중재 활용 가능성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남미, 남미공동시장, 시장점유율, 중력모형, FTA, 중재

* 중앙대학교 무역물류학과 박사, 주저자.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I. 서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을 체결하여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ASEAN, 인도, EU, 미국,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주요 국가 혹은 경제공동체와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다. 그 중 남미국가들과의 FTA는 칠레 이후 페루와 2011년에 FTA를 발효하였으며 2012년에 콜롬비아와 협상을 타결하였다. 하지만 아직 남미의 거대 시장인 브라질, 아르헨티나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둘 국가가 속한 남미공동시장¹⁾과의 FTA 협상 또한 아직 공동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남미지역의 FTA 확대가 다른 지역의 확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남미와 우리나라의 물리적 거리차이로 인해 남미국가와 관련된 정보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남미 국가들과의 무역 현황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FTA는 단순히 관세장벽을 낮추는 시장개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FTA는 직접투자, 정부조달, 환경정책, 법률서비스 등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의미한다. 게다가 FTA에서는 교역 당사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협정문 내에 분쟁해결 조항을 두고 있는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 FTA 체결국들 간의 법체계가 상이한 점과 국경을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거리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남미지역은 기업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남미지역의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리스크 감소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기업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라 판단된다. 이는 분쟁해결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며 FTA 분쟁해결절차에도 주로 활용되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를 들 수 있다. 특히 중재제도가 ADR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국제적으로 그 승인과 집행이 인정되는 국제협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미 시장과 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을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남미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교역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와 FTA를 발효하였거나 체결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1) 메르코수르(MERCOSUR)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토대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보호방안으로서 남미지역에서의 중재제도 활성화와 활용 전략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남미시장 진출을 고려중이거나 진출해 있는 기업인들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남미시장 교역 현황

1. 선행연구

남미시장의 중재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김상찬·김봉조(2013)²⁾는 칠레 중재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칠레의 대표적 중재기관인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와 칠레의 중재법인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분석하였다. 칠레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조희문(2014)³⁾의 연구는 중남미 중재 헌법화 현상이 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중재의 독립성과 신속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중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박종탁(2014)⁴⁾의 연구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것에 비해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한 한계를 이유로 중남미 법 연구지원과 활용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판례검색과 번역 서비스 실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의지를 높이고 신사업 및 서비스 무역의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였다.

FTA제도 안에서의 중재를 살펴보면 김상호(2007)⁵⁾는 FTA하에서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과 규칙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의 분쟁해결 구조를 동아시아국가와 한·칠레 FTA 순으로 분석하였고, 최태관(2007)⁶⁾은 FTA 투자협정의 의의와 유형 및 내용 그리고 투자분쟁의 해결절차 등에 대해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중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하충룡, 박원형(2006)⁷⁾의 연구로 뉴욕협약이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협약으로서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외국이라는 국적의 판단

2) 김상찬·김봉조, “칠레의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제5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pp.17-37.

3) 조희문, “중남미에서 중재의 헌법화 현상과 중재발전”, 『중남미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4, pp.177-204.

4) 박종탁, “중남미법 연구실태와 중남미법 번역의 필요성”, 『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제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09, pp.71-98.

5) 김상호, “FTA하에서의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 pp.3-32.

6) 최태관, “FTA투자협정과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pp.141-165.

7) 하충룡·박원형,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미국법원의 해석”,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 pp.121-150.

과 관련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남미시장에 대한 교역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기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남미시장 현황

(1) 개요

남미는 오늘날 12개 국가⁸⁾와 프랑스의 해외주로 구성되어있다. 남미시장은 우리나라와 물리적인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며, 사용하는 언어와 관습이 다양하여 북미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남미시장 진출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11년 페루와 FTA가 발효되어 남미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또한 남미시장의 성장은 우리기업들이 남미지역을 더 이상 미개척지로 남겨둘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현지공장 설립 등 많은 진출을 시도하게 만들었다. 본 장에서는 남미시장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상품 점유율을 살펴보고 교역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남미시장 시장 점유율

시장점유율이란 상대국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미12개국의 교역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미시장에서의 한국물품의 시장점유율을 다음의 산식으로 구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흐름을 관측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모든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2014년까지를 기간으로 분석하였다.

$$MS(S)_{ijt} = \frac{X(S)_{ijt}}{IM(S)_{jt}}$$

〈표 2-1〉 남미 시장점유율 산출 방법

시장점유율	설명
$MS(S)_{ijt}$	t시점에서 한국 상품(i)의 남미국가(j)에서의 시장점유율
$X(S)_{ijt}$	t시점에서 한국 상품(i)의 남미국가(j)에 대한 전체수출액
$IM(S)_{jt}$	t시점에서 남미국가(j)의 전체 총 수입액

8)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파라과이,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표 2-2〉 남미시장(세계) 한국수출 시장점유율

구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남미전체
2001	1.49%	0.38%	2.90%	3.55%	1.76%	3.13%	2.64%
2002	0.57%	0.44%	2.64%	2.95%	2.14%	2.60%	2.32%
2003	1.17%	0.39%	2.35%	2.68%	2.14%	2.73%	2.14%
2004	1.07%	0.30%	2.84%	2.86%	2.69%	3.35%	2.38%
2005	1.08%	0.36%	3.28%	3.50%	2.94%	3.58%	2.75%
2006	0.97%	0.27%	3.35%	4.02%	3.49%	3.19%	2.95%
2007	1.09%	0.29%	2.89%	6.55%	3.41%	3.16%	3.10%
2008	1.01%	0.30%	3.42%	4.83%	2.75%	3.32%	2.84%
2009	1.27%	0.30%	4.16%	5.21%	2.42%	2.91%	3.09%
2010	1.60%	0.35%	4.30%	4.98%	3.41%	4.31%	3.55%
2011	1.45%	0.34%	5.23%	3.19%	2.95%	3.65%	3.53%
2012	1.42%	0.44%	4.61%	3.08%	2.53%	3.40%	3.12%
2013	1.46%	0.55%	4.04%	3.10%	2.26%	3.40%	2.99%
2014	1.15%	1.24%	3.90%	2.88%	2.36%	2.95%	2.81%

구분	가이아나	페루	파라과이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세계
2001	0.36%	2.57%	1.46%	0.58%	2.56%	3.37%	2.37%
2002	0.24%	2.61%	1.28%	0.40%	1.76%	2.12%	2.46%
2003	0.33%	2.43%	1.41%	0.41%	2.02%	1.28%	2.51%
2004	0.54%	2.43%	1.44%	0.51%	1.27%	1.56%	2.69%
2005	0.39%	2.26%	1.57%	0.50%	1.47%	2.61%	2.64%
2006	0.66%	2.34%	1.43%	0.64%	1.13%	3.26%	2.63%
2007	0.52%	2.29%	1.10%	0.83%	1.27%	2.94%	2.60%
2008	0.65%	2.40%	1.04%	1.07%	1.09%	1.54%	2.55%
2009	3.49%	2.94%	0.80%	0.67%	0.93%	0.91%	2.86%
2010	5.52%	3.15%	1.30%	1.02%	1.85%	1.99%	3.04%
2011	3.59%	3.61%	1.61%	1.17%	2.02%	1.26%	3.04%
2012	1.35%	3.49%	1.39%	1.64%	1.58%	0.89%	2.98%
2013	1.46%	3.32%	1.67%	0.86%	3.31%	0.99%	3.01%
2014	1.28%	3.30%	1.84%	0.61%	2.37%	0.52%	3.05%

시장점유율을 산출한 결과는 상기 <표 2-2> 와 같다. 남미전체수입액에서 한국의 수출액(남미의 對한국 전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관측 시작년도인 2001년도부터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0년도에 최고치인 3.55%를 기록하고 나서 4년 연속으로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2010년 대비 0.7%가 하락한 2.81%를 기록하였다. 이는 남미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수출물품의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결과만 놓고 한국수출물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 세계 전체 수입액 중에서 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전 세계시장의 한국물품 시장점유율은 거의 유사한 3% 수준

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물품의 對세계 점유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수출물품의 경쟁력이나 상품성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남미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상품의 경쟁력이 아닌 외부적인 다른 요인들이 한국 수출물품의 점유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점유율 감소 폭이 큰 나라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칠레, 에콰도르, 가이아나 등의 나라에서 한국 수출물품의 점유율이 같은 시기에 1% 이상 감소하였다.

〈표 2-3〉 한국의 남미 수출비중

구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남미전체
2001	0.201%	0.004%	1.071%	0.381%	0.150%	0.111%	2.488%
2002	0.032%	0.005%	0.768%	0.279%	0.168%	0.103%	1.664%
2003	0.083%	0.003%	0.587%	0.267%	0.153%	0.092%	1.385%
2004	0.094%	0.002%	0.703%	0.279%	0.181%	0.104%	1.584%
2005	0.109%	0.003%	0.848%	0.405%	0.219%	0.121%	2.045%
2006	0.102%	0.002%	0.941%	0.481%	0.280%	0.119%	2.383%
2007	0.132%	0.003%	0.939%	0.839%	0.302%	0.115%	2.827%
2008	0.137%	0.004%	1.404%	0.718%	0.258%	0.148%	3.064%
2009	0.136%	0.004%	1.461%	0.613%	0.219%	0.121%	2.874%
2010	0.195%	0.004%	1.662%	0.632%	0.298%	0.190%	3.404%
2011	0.195%	0.005%	2.129%	0.429%	0.291%	0.160%	3.654%
2012	0.178%	0.007%	1.877%	0.451%	0.268%	0.156%	3.374%
2013	0.192%	0.009%	1.731%	0.439%	0.240%	0.164%	3.226%
2014	0.132%	0.023%	1.558%	0.364%	0.264%	0.142%	2.855%

구분	가이아나	페루	파라과이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2001	0.001%	0.125%	0.021%	0.002%	0.052%	0.369%	
2002	0.001%	0.121%	0.013%	0.001%	0.021%	0.152%	
2003	0.001%	0.105%	0.014%	0.001%	0.023%	0.055%	
2004	0.001%	0.097%	0.015%	0.001%	0.016%	0.091%	
2005	0.001%	0.099%	0.018%	0.002%	0.020%	0.201%	
2006	0.002%	0.110%	0.021%	0.002%	0.017%	0.306%	
2007	0.001%	0.125%	0.017%	0.002%	0.019%	0.332%	
2008	0.002%	0.171%	0.022%	0.003%	0.023%	0.173%	
2009	0.011%	0.176%	0.015%	0.003%	0.018%	0.097%	
2010	0.017%	0.203%	0.028%	0.003%	0.034%	0.138%	
2011	0.011%	0.246%	0.036%	0.003%	0.039%	0.111%	
2012	0.005%	0.269%	0.029%	0.005%	0.034%	0.095%	
2013	0.005%	0.257%	0.036%	0.004%	0.069%	0.079%	
2014	0.004%	0.243%	0.039%	0.002%	0.045%	0.041%	

(3) 한국의 對남미 수출 비중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남미시장의 수출액을 분석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수출 비중이라 하고 이를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PE_{ijt} = \frac{EX_{ijt}}{TX}$$

〈표 2-4〉 수출 비중 산출 방법

수출비중	설명
PE_{ijt}	t시점에서 한국 상품(i)의 남미국가(j)에서의 수출 비중
EX_{ijt}	t시점에서 한국 상품(i)의 남미국가(j)에 대한 전체수출액
TX	t시점에서 한국의 전체 총 수출액

수출비중은 앞서 살펴본 시장 점유율과 같이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수출비중을 산출한 결과는 상기 <표 2-3>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에서 남미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남미시장에서의 우리 상품의 시장점유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최근 4년간 수출비중이 3.654%에서 2.855%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남미의 對한국 수출 시장점유율

한국의 對남미 수출이 최근 몇 년간 명확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對남미 수출과 함께 남미 국가들의 對한국 수출의 시장점유율 또한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남미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상기 남미에서의 한국물품의 시장점유율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MS(K)_{ijt} = \frac{X(K)_{ijt}}{IM(K)_{jt}}$$

〈표 2-5〉 한국 시장점유율 산출 방법

시장점유율	설명
$MS(K)_{ijt}$	t시점에서 남미국가(i)의 전체 수출의 한국(j)에서의 시장점유율
$X(K)_{ijt}$	t시점에서 남미국가(i)의 전체 수출의 한국(j)에 대한 전체수출액
$IM(K)_{jt}$	t시점에서 한국(j)의 전체 총 수입액

〈표 2-6〉 남미국가의 對한국수출 시장점유율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점유율	1.93%	1.98%	2.08%	2.47%	2.24%	2.66%	2.58%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점유율	2.47%	2.70%	2.73%	2.93%	2.86%	2.76%	2.49%

남미국가들의 對한국 수출품의 시장점유율은 대체적으로 3% 미만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남미시장에서의 한국의 시장점유율과 추이 자체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감소한 비율은 남미에서의 한국의 시장점유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지만 한국의 수출과 남미의 수출 양 쪽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과 남미국가들 간의 교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5) 현황분석 시사점

남미시장 교역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속적인 성장세가 둔화단계로 바뀌게 되면서 2010년 이후 우리와 남미의 교역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관찰 할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의 FTA가 칠레, 페루와 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對남미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품질 등 제품자체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교역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외부적 원인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업의 진출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미시장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 요인들 가운데 ADR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재제도 관련 국제협약 가입여부와 FTA 발효여부가 교역량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교역 증대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겠다.

Ⅲ. 교역 증대요인 실증 분석

1. 실증 분석

(1) 중력모형

본 장에서는 남미시장 교역액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국제무역 교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고자 한다.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인력)은

두 물체 질량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두 물체를 대상 국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교역량, 두 물체의 질량을 GDP나 인구수와 같은 경제지표, 물체 사이의 거리를 양 국가 간의 거리로 치환하여 양 국가의 무역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 중력모형은 양국 간 교역량이 양 국가의 GDP에 비례하고 양 국가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전제를 기초로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_{ij} = C \times Y_i \times Y_j \times P_i \times P_j \times \frac{1}{D_{ij}} \times \frac{1}{OTH_{ij}}$$

여기서 C는 상수항이며, T_{ij} 는 i국과 j국간의 교역량, Y는 각각 i국과 j국의 GDP, D는 i국과 j국간의 거리다.⁹⁾

기본적인 중력모형에 포함된 중력모형의 주요 변수이외에도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다른 변수에는 인구, 구매력지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친밀도의 개념으로 언어, 종교, 인종, 정치제도 등이 사용되기도 하고, FTA와 같은 경제통합 여부 등이 변수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교역을 증진하거나 저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중력모형 방정식의 형태가 달라진다.¹⁰⁾ 이러한 중력방정식을 횡단면자료로 놓고 시계열자료를 함께 고려하는 패널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상수항의 처리 방법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¹¹⁾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¹²⁾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모형을 선택할지는 하우스만(Hausman) 검정방법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검정하고 결과가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하고, 유의적일 경우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다.¹³⁾

(2) 관측변수

본 연구의 중력모형 방정식에 추가되는 관측변수는 다음의 2개가 있다. 우선, 분쟁해결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¹⁴⁾과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이하 워싱턴협약)¹⁵⁾

9) P. Krugman and M. Obstfeld, *International Economics : Theory&Policy 7th*, Addison Wesley, 2006, p.39.

10) 이철, “중력모형을 적용한 한국무역(1996-2000)의 실증적 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44-46.

11) 고정효과모형 : 관측되지 않는 효과가 분석모형의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어 상수항에 반영되며, 상수항은 시간 및 대상의 변동에도 고정되어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12) 확률효과모형 : 관측되지 않는 효과가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없어 오차항에 반영되며, 상수항이 오차항과 같이 시간 및 대상에 따라 바뀐다고 가정한다.

13) 강다연·전영서, “중국의 FTA교역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8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4, p.153.

14) 정식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며 뉴욕협약이라고 통상 불리고 있음.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상업회의소 주도로 작업이 개시되어 오늘날 뉴욕협

이다. 즉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상 의무와 관련되어 의미가 크다.¹⁶⁾ 여기에서는 이들 국제협약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DID 추정법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한국과의 FTA 발효 여부가 교역량 증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FTA 발효 여부를 더미변수로 관측하였다.

첫 번째 관측변수인 협약가입여부는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의 가입여부로 통제집단과 효과집단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하면 패널자료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더미변수에는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을 동시에 발효한 국가의 협약 발효 이후 교역량에만 1의 더미변수가 부여 되며, 두 협약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0의 더미변수가 부여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통제집단과 효과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응용한 것으로 DID(Difference in Difference) 추정법이라 한다.¹⁷⁾

〈표 3-1〉 더미변수

	뉴욕협약 미 발효	뉴욕협약 발효
워싱턴협약 미 발효	0×0=0	0×1=0
워싱턴협약 발효	1×0=0	1×1=1

〈표 3-2〉 남미국가의 중재관련 국제협약 가입 여부

	워싱턴협약	뉴욕협약
아르헨티나	1994년 발효	1989년 발효
볼리비아	미 발효	1995년 발효
브라질	미 발효	2002년 발효
칠레	1991년 발효	1975년 발효
콜롬비아	1997년 발효	1979년 발효
에콰도르	미 발효	1962년 발효
가이아나	1969년 발효	2014년 발효
페루	1993년 발효	1998년 발효
파라과이	1989년 발효	1998년 발효
수리남	미 발효	미 발효
우루과이	2000년 발효	1983년 발효
베네수엘라	미 발효 ¹⁸⁾	1995년 발효

약이 탄생하였음. 현재까지 총 156개국 가입한 상태임(2016.4.15.현재).

- 15) 정식명칭은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이며 워싱턴협약이라고 통상 불리고 있음. 세계은행 주도록 만들어 졌으며 본 협약에 따라 투자분쟁 해결기구가 설치되었음. 현재 가입국은 총 160개국임(2016.4.15.현재).
- 16) 박유용, 서세걸,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 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p.57.
- 17) Wooldridge, *Econometric Analysis on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The MIT Press, 2002, pp.130-132.
- 18) 베네수엘라는 워싱턴협약에 1993년 가입하여 1995년부터 발효해 왔으나 2012년 본 협약에 탈퇴하여 현재는 미발효상태임.
출처: <https://icsid.worldbank.org/apps/ICSIDWEB/icsiddocs/Documents/List%20of%20Contracting%20States%20and>

두 번째 관측변수인 FTA 발효로 인한 교역량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한 국가는 효과집단으로 FTA를 발효하지 않은 국가를 통제집단으로 나누었다. 만약 FTA 발효국과의 교역량만 관찰하게 된다면 FTA 발효의 순수효과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FTA 이외 관측하지 못하는 변수에 의해서 교역량이 증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FTA 미발효 국가를 통제집단으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중력모형 방정식에 FTA 발효의 경우 1의 더미변수를, FTA가 미 발효 된 경우 0의 더미변수를 부여하여 FTA 발효가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한다. 효과집단은 한국이 발효한 FTA 상대국으로서 칠레와 페루가 해당되며, 통제집단은 FTA 협상타결 후 미발효 상대인 콜롬비아와 공동연구 단계인 남미공동시장5개국을 선정하였다.

〈표 3-3〉 효과집단과 통제집단

구분	국가	단계
효과집단	칠레(2004년 발효), 페루(2011년 발효)	FTA 발효국
통제집단	콜롬비아	FTA 타결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FTA 공동연구

시계열의 경우 FTA의 발효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FTA 발효 이후에는 1의 더미변수를, FTA 발효 이전에는 0의 더미변수를 부여하여 구분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관련 통계자료가 공개되고 발표된 2014년까지 총 14년으로 하였다. 또한 시계열자료를 연도별 데이터로 추정하여 FTA가 발효된 년도의 전체 교역량은 FTA의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하였다. 한국과 FTA 관련 이슈가 없는 국가들의 경우 남미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표 3-3>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분석자료 추출

분석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교역량 자료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¹⁹⁾와 UN COMTRADE²⁰⁾ 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한국과 상대국의 연도별 1인당 GDP와 PPP 그리고 인구수 자료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²¹⁾에서 수집하였으며, 교역국간의 거리 수치는 CEPII의 데이터베이스²²⁾로부터 확보하였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중력모형분석에는 패널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인 eViews 5.0을 사용하였다.

%20Other%20Signatories%20of%20the%20Convention%20-%20Latest.pdf(최종접속일 : 2016.4.15.)

19) KITA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6.4.1)

20)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검색일 : 2016.4.1)

21) World Bank Database, <http://databank.worldbank.org/data/> (검색일 : 2016.4.1)

22) CEPII Database, http://www.cepii.fr/CEPII/en/bdd_modele/bdd.asp (검색일 : 2016.4.1)

〈표 3-4〉 분석자료 추출

변수	출처	단위
수출입 교역량	KITA 무역통계 UN COMTRADE	US \$
GDP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US \$
PPP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US \$
인구수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명
양국 간 거리 (Great Circle Distance)	CEPII의 데이터베이스	Km

2. 분석 결과

(1) 연구모형

상기 관측변수를 이용하여 남미시장 교역액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패널자료 중력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text{TRADE}_{ijt}) = & \beta_0 + \beta_1 \ln(\text{GDP}_i \times \text{GDP}_j)_t + \beta_2 \ln(\text{POP}_i \times \text{POP}_j)_t + \beta_3 \ln(\text{DIS}_{ij}) \\ & + \beta_4 \ln(\text{WSC}_j \times \text{NYC}_j)_t + \beta_5 (\text{FTA}_j \times \text{AFT}_t)_t + \epsilon_{ijt} \end{aligned}$$

〈표 3-5〉 연구모형 변수 설명

변수	설명
TRADE_{ijt}	t시점에서 한국(i)과 남미 상대국(j)간 교역량(수출액+수입액)
$(\text{GDP}_i \times \text{GDP}_j)_t$	t시점에서 한국(i)과 남미 상대국(j)의 1인당 GDP 곱
$(\text{POP}_i \times \text{POP}_j)_t$	t시점에서 한국(i)과 남미 상대국(j)의 인구의 곱
DIS_{ij}	한국(i)과 남미 상대국(j)의 거리(Great Circle Distance)
$(\text{WSC}_j \times \text{NYC}_j)$	워싱턴협약과 뉴욕협약이 동시에 발효된 경우에만 더미변수가 1로 나타나는 상호작용 더미변수
WSC_j	상대국(j)이 워싱턴협약 가입국으로 효과집단인 경우 1, 미 발효국가로 통제집단인 경우 0을 부여하는 더미변수
NYC_j	상대국(j)이 뉴욕협약 가입국으로 효과집단인 경우 1, 미 발효국가로 통제집단인 경우 0을 부여하는 더미변수
$(\text{FTA}_j \times \text{AFT}_t)$	효과집단인면서 FTA 발효 이후인 경우에만 더미변수가 1로 나타나는 상호작용 더미변수
FTA_j	상대국(j)이 FTA 발효에 대한 효과집단인 경우 1, 통제집단인 경우 0을 부여하는 더미변수
AFT_t	FTA 발효 이후의 경우 1, 이전의 경우 0을 부여하는 더미변수
ϵ_{ijt}	순수 오차항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는 $TRADE_{ijt}$ 이며, 각 변수들은 로그선형을 취한 계수값이다. 이는 탄력계수로 독립변수 1%의 변화율이 종속변수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독립변수 $(GDP_i \times GDP_j)_t$ 는 t시점에서 한국(i)과 남미 상대국(j)의 1인당 GDP의 곱이다. 이 변수는 중력모형 가정에서의 물체의 크기를 의미 하며, 국제무역에서는 두 국가의 경제규모를 의미한다. GDP변수가 클수록 국가의 생산성과 시장규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독립변수 $(POP_i \times POP_j)_t$ 는 t시점에서 한국(i)과 남미 상대국(j)의 인구의 곱으로, 이 또한 두 국가의 경제규모 특히 통합된 내수시장의 크기를 의미한다.

한국과 남미 상대국간 지표상의 비행거리(Great Circle Distance)를 의미하는 독립변수 DIS_{ij} 는 중력모형 가정에서 교역량 증대의 방해요인이다. 단순한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시장접근성과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독립변수이다.

더미변수 WSC_j 는 상대국이 워싱턴협약의 발효국인 경우 1을, 미 발효국인 경우 0을 부여하며, 더미변수 NYC_j 는 상대국이 뉴욕협약의 발효국인 경우 1을, 미 발효국인 경우 0을 부여하는 변수이다. 이 두 가지 더미변수를 상호작용하여 $(WSC_j \times NYC_j)$ 는 상대국이 워싱턴협약의 발효국이자 뉴욕협약 발효국인 경우에만 더미변수 1을 부여하는 변수이다. 국제중재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협약의 가입여부는 단순히 협약의 적용여부를 넘어서서 국제중재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그 국가에 마련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더미변수 FTA_j 는 상대국이 FTA 발효국인 경우 1을, 미 발효국인 경우 0을 부여하며, 더미변수 AFT_t 는 FTA 발효된 경우 1을, 발효 이전이면 0을 부여하는 변수이다. 이 두 가지 더미변수를 상호작용하여 $(FTA_j \times AFT_t)$ 는 FTA 발효국의 발효 이후에만 더미변수 1을 부여하는 변수이다.

(2) 변수의 예상

중력모형 기본 가정에 따르면 양국가의 교역량은 양국의 GDP와 인구의 곱에 비례하고, 양국가간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 변수와 내수시장의 절대적 크기를 의미하는 인구수 변수는 양의 부호(+)가 예상이 된다. 그에 반하여 거리변수의 경우 음의 부호(-)가 예상이 된다.

본 연구의 핵심 관측변수인 국제협약 상호작용 더미변수의 경우 워싱턴협약과 뉴욕협약의 동시 발효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양국가의 교역량과 더미변수의 증가(0에서 1)가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면 효과집단인 워싱턴협약과 뉴욕협약의 동시 발효국이 통제집단인 미 발효국보다 교역량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교역량과 더미변수의 증가가 상반되는 방향성을 가진다면 효과집단이 통제집단인 미 발효국과 비교해서 교역량 감소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관측변수인 FTA 상호작용 더미변수의 경우 FTA 발효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양국가의

교역량과 더미변수의 증가(0에서 1)가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면 효과집단인 FTA 발효국이 통제집단인 미 발효국보다 교역량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교역량과 더미변수의 증가가 상반되는 방향성을 가진다면 효과집단이 통제집단인 미 발효국과 비교해서 교역량 감소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3-6〉 독립변수의 예상 계수 부호

변수	설명	예상 부호
$(GDP_i \times GDP_j)_t$	교역량과 경제규모(GDP)의 관계	(+)
$(POP_i \times POP_j)_t$	교역량과 양국 인구규모(POP)의 관계	(+)
DIS_{ij}	교역량과 양국 간 거리의 관계	(-)
국제협약 더미변수	교역량과 FTA 발효효과의 관계	(+)
FTA 더미변수	교역량과 관세율 변화량의 관계	(+)

(3) 패널중력모형분석

하우스만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고정효과모형보다 확률효과모형의 추정계수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패널중력모형을 분석해 보면, 우선 분석 결과에서 R-square 값이 0.9059로 나온 것은 양국의 교역량에 대해서 약 90%의 정확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7〉 중력모형 패널분석 결과

모형	변수	계수값	T-값	R-square	F-값
OLS	Ln(GDP)	0.6245	10.3045***	0.9059	204.1444
	Ln(POP)	1.0907	21.6238***		
	Ln(DIS)	1.2359	2.5005**		
	WSC*NYC	0.1176	1.8691*		
	FTA*AFT	0.7215	10.7892***		
	Constant	-17.9565	-7.6585***		
고정효과 모형	Ln(GDP)	0.7596	6.3115***	0.9135	54.6234
	Ln(POP)	1.0910	21.1360***		
	Ln(DIS)	1.0608	2.0263**		
	WSC*NYC	0.1443	2.1289**		
	FTA*AFT	0.7179	10.3250***		
	Constant	-18.3257	-7.5934***		
확률효과 모형	Ln(GDP)	0.6245	10.0709***	0.9059	204.1444
	Ln(POP)	1.0907	21.1336***		
	Ln(DIS)	1.2359	2.4438**		
	WSC*NYC	0.1176	1.8267*		
	FTA*AFT	0.7215	10.5446***		
	Constant	-17.9565	-7.4849***		
Hauseman χ^2	0.0000				

주 : * p<0.1, ** p<0.05, *** p<0.01

중력모형 방정식에 로그선형을 취할 때 그 계수값은 탄력계수로 독립변수 1% 변화율이 종속변수인 양국가간의 교역량에 주는 영향을 나타낸다. GDP변수의 계수값은 1% 유의수준에서 양(+)¹⁾의 값인 (0.6245)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남미 상대국과의 수출입 교역량은 양 국가의 경제규모를 의미하는 GDP가 1% 커질수록 약 0.6% 증가함을 의미한다.

인구수(POP)변수의 계수값은 1% 유의수준에서 양(+)¹⁾의 값인 (1.0907)을 나타내며 이는 인구수가 1% 증가할수록 양국가의 교역량이 약 1.09%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가간 거리를 나타내는 (DIS)변수의 계수값은 1% 유의수준에 양(+)¹⁾의 값인 (1.235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력모형의 가정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실증분석의 관측국가가 모두 남미에 있는 8개국으로 한국과의 양국가간 거리가 사실상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중력모형의 가정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국가간 거리가 남미 국가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비교 대상과 함께 분석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거라 추정해본다.

본 연구의 관측변수로 작용한 분쟁해결 관련 국제협약의 더미변수인 (WSC×NYC)변수의 계수값은 10% 유의수준에서 양(+)¹⁾의 값인 (0.1176)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남미 상대국의 교역량이 워싱턴협약과 뉴욕협약의 동시 발효에 따른 더미변수 변화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효과집단인 남미의 협약 발효국과 통제집단인 미 발효국을 비교하면, 워싱턴협약과 뉴욕협약 모두를 가입하여 발효한 것이 한국과 상대 남미국가와의 교역량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DID 방식으로 FTA 발효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더미변수인 (FTA×AFT)변수의 계수값은 1% 유의수준에서 양(+)¹⁾의 값인 (0.7215)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남미 상대국의 교역량이 FTA발효에 따른 더미변수 변화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효과집단인 FTA 발효국과 통제집단인 FTA 미 발효국과 비교하면, FTA 발효가 양국가간의 교역량 증대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상기 패널중력모형의 분석에 따르면 종속변수인 한국과 상대국의 교역량은 경제규모인 GDP, 인구수, FTA 발효효과 그리고 워싱턴협약과 뉴욕협약의 발효여부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과 남미국가간 거리가 중력모형의 가정과는 다르게 비례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남미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다시 회복하고 교역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외부적 요인들에 정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남미국가들과의 FTA 확대와 국제중재를 통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남미와 우리나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본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한 사항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력모형 등을 이용하는 계량적인 방식에서는 관측변수를 두고 그것

이 종속변수인 교역량과의 어떠한 관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측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서 오차항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상 FTA의 발효와 중재관련 국제 협약의 가입은 한국과 남미의 상품교역량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측변수는 교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단순히 국제협약 가입 사실만으로 남미국가들이 우리기업이나 투자자와의 분쟁 발생시 국제 중재를 진행하거나 남미와 우리의 교역이 저절로 증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재 관련 국제협약도 가입 사실만으로 그 국가의 중재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미에서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미의 중재 현황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실증분석에 활용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재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실무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IV. 교역 활성화를 위한 중재제도 활용 가능성

앞 장에서는 교역 증대 요소로서 분쟁해결 관련 국제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리와 FTA 발효 또는 체결국들인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국가별 중재제도의 특징과 실무분야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미시장에서의 중재제도 활용 전략도 함께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 칠레

칠레 정부는 2006년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을 발효시키면서 국제 중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UNCITRAL 모델 중재법을 근간으로 제정하여 국제화에 성공하였다.²³⁾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면 당사자들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며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로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²⁴⁾ 이와 함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중재판정에 대한 칠레 법원의 태도가 어느 정도 국제적 기준에 따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칠레의 대표적 중재기관으로는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조정중재센터를 들 수

23)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은 일반조항, 중재합의, 중재판정부, 관할권, 절차규정,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등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2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10장

있다. 1992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1998년 조정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 국제상사중재 사건을 다루면서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기업 및 법무법인이 포함된 1,500개 이상의 중재사건을 처리하였다.²⁵⁾ 그리고 조정과 중재 선진화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ODR을 통한 조정이나 중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티아고 조정중재센터는 절차진행을 위해 조정절차, 국내중재절차, 국제중재절차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다.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인은 1인 또는 3인으로 선임되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중재신청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 선정에 합의해야 하며 실패했을 경우 센터에서 결정한다.²⁶⁾ 또한 중재인은 사전회의(preliminary meetings)를 개최하여 사건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날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양당사자들에게 공지토록 하고 있다.²⁷⁾

칠레는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로서는 우리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조항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경우 제 3국가 내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산티아고 조정중재센터를 지정하는 편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특히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는 대한상사중재원과 2003년 기관 업무협정을 체결한 바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중재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⁸⁾

칠레는 국내중재의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²⁹⁾ 따라서 조정 등 다른 ADR 절차를 활용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산티아고 조정중재센터의 국내중재 절차로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것과 스페인어로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³⁰⁾ 따라서 만일 외국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중재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사전에 특이절차 및 강행규정 등에 대해서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사인을 비롯한 국가를 상대로 한 중재까지 칠레가 중재 관련 국제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와 체결한 FTA 협정문 내에도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무역이나 투자에 있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³¹⁾ 그리고 칠레 정부가 워싱턴 협약 가입국으로서 ICSID중재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주변의 협약 미가입국들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라 보이며 앞서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교역

25) 산티아고 조정중재센터 (출처: http://www.camsantiago.com/english/about_us.html, 최종접속일: 2016.4.7.)

26) CAM Rules International Arbitration Article 8.

27) CAM Rules International Arbitration Article 21.

28) 대한상사중재원 (출처: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arbitcontract/1008?ac_clsf=2&Num=4&dNum=2&mi_code=arbitcontract, 최종접속일: 2016.4.22.)

29) 김상찬·김봉조, 전계논문, p.22.

30) CAM Rules Domestic Arbitration Article 4 & Article 6.

3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10장

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정중재센터가 1992년 설립된 이래 많은 국내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국제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법안 역시 발효되어 2006년부터 국제중재 서비스도 시작했다는 점은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남미 내 다른 중재기관들 보다는 오히려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내중재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만일 현지 법인 설립 등 현지화를 추진한다면 계약 종류에 따라 분쟁해결조항 작성 시 주의가 요망된다.

2. 페루

페루는 중재를 헌법 내에 두어 당사자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법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중재 또는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³²⁾ 다만 페루를 비롯한 일부 남미 국가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개인의 권리가 헌법과 위배될 경우 중재판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도 있다.³³⁾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중재 독립성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재제도 활용이 불안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페루 헌법재판소가 중재판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적절한 절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외국기업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으나 여전히 법원에서 얼마나 우호적 태도를 보일지 알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페루는 국가 안정성이 주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이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뒷받침하고 있다.³⁴⁾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의 안정성을 분석코자 사회 안정과 외교 관계를 수치화시켰고 특히 사회 안정 측면을 확인코자 부패인식지수와 민주주의지수를 넣어 분석하였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문을 살펴보다라도 상품무역에 대한 사인 간 분쟁에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도 해결한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본 협정에 따르면 단지 상품무역에 대한 위원회를 양국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무역증진이나 무역장벽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할 것과 협정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패널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할 것만 제시하고 있다.³⁵⁾ 다만 외국인 투자와 서비스무역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는 보장하고 있고³⁶⁾ 상품무역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페루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페루 정부가 신경 쓰고 있음은 엿볼 수 있다.³⁷⁾ 또한 투자분쟁에 대한 투자자

32) 페루 헌법 제62조.

33) 조희문, 전계논문, p.188.

34) 임재빈, 정연우, 최대식, 성장환, “해외 신흥 도시개발 참여를 위한 유형 분류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7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p.106.

35)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제2장 및 제23장.

36)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제9조 및 제10조.

37)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제2.2조.

와 국가 간 분쟁해결은 ICSID 중재까지 허용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³⁸⁾

따라서 우리 기업이 상품무역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중재를 비롯한 ADR 활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페루가 중재제도와 관련된 국제협정 가입국 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국제중재기관이 없다는 점과 외국기업이 제출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해당 법원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진출에 큰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 이는 해당 중재기관의 절차적 특이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비롯한 판정을 내릴 중재인에 대한 신뢰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의 중재 친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역별로 해당 법원들이 일치되게 중재판정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은 기업 입장에서는 진출 고려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투자조약 중재의 경우도 투자유치국의 재산권, 소유권 침해나 경영권 간섭, 과세 등의 간접수용에 따른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어 ICSID 중재 허용 여부만 놓고 안정적이라고 접근하기는 다소 불안한 측면도 있다.³⁹⁾

3.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아직까지 우리와 FTA를 발효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협상이 타결되어 조만간 발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콜롬비아 중재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콜롬비아는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의 체약국이다.⁴⁰⁾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처럼 법적 안정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 볼 수 있다.

콜롬비아 중재제도를 살펴보면 페루와 마찬가지로 중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재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즉 헌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찾아낸다면 중재판정 패소 당사자가 언제든지 중재판정에 대한 대항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또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될 가능성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집행거부 사유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중재를 헌법상에 규정한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콜롬비아는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외국과의 교역에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재제도에 대해서도 우호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콜롬비아에서 진행되는 중재는 국내와 국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제중재의 경우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⁴²⁾

38)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제9장 제2절.

39) 오원석, 황지현,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5, p.68.

40) 뉴욕협약은 1979년 9월 가입하여 같은 해 12월부터 발효한 상태이며 워싱턴협약은 1993년 5월 가입하여 1997년 8월부터 발효된 상태이다.

41) 조희문, 전계논문, p.183.

콜롬비아의 대표적 중재기관으로는 보고타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가 있다. 대한상사중재원과도 두 기관 사이에 업무협정을 맺고 있다.⁴³⁾ 따라서 콜롬비아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콜롬비아 중재제도 및 보고타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업무협정의 범위가 정보 교환 및 문서전달 등의 단순한 업무 약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타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는 매년 300여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인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중재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중재처리가 가능하여 사건접수에서부터 서류제출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정제도 역시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분쟁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콜롬비아의 경우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고 있다. 국내중재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받은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재판 청구 권리가 있어 국내중재에 해당될 경우 재판 청구 가능성도 있다.⁴⁴⁾ 그러나 국제중재는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어 승인과 집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콜롬비아가 BIT 등의 국제협정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뒷받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지 법인 설립 시 중재대상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결정기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구분 기준을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이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국제중재에 해당된다고 규칙에서 밝히고 있다.⁴⁵⁾ 이와 같이 각 국 중재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재 결정 기준을 면밀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남미공동시장

1995년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은 EU를 모방해 결성된 중남미 경제블록이다.⁴⁶⁾ 잠재적인 시장잠재력을 있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소비국으로서 지속적인 교역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미공동시장과의 FTA는 체결되지 않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앞의 실증분석처럼 남미공동시장에 속한 국가 모두 뉴욕협약의 체약국이며 브라질, 베네수엘라를 제외

42) 상개논문, p.190.

43) 2013년 10월 18일 발효됨.

44) 조희문, 전개논문, p.191.

4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조 제4항.

46) 박중성, “국내기업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학회지」, 제3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p.123.

한 나머지 국가들은 워싱턴협약에도 가입된 상태이다. 따라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국가들이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해외 자본의 투자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여도 중재를 신청할 믿을만한 중재기관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⁴⁷⁾ 따라서 기업 독자적으로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다. 또한 남미공동시장 각국의 중재기관들 중 대한상사중재원과 별도의 업무협정을 체결한 기관은 없다. 이는 다시 말해 국제중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잘 알려진 국제중재기관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경우 그동안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쉽게 개방한 대가로 이제는 외국기업들로부터 투자조약중재를 당해 2000년대 이후 거액의 채무불량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중재 관련 국제협약의 가입국들임에도 불구하고 우호적 관점에서 실제 국제중재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국제중재기관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해당 국가로 진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계약서 내 분쟁해결절차를 확인하고 남미공동시장 진출 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논의가 있어야 추후 발생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V. 결 론

대한민국은 전세계 시장을 무대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국가들과 FTA 등 협정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기업은 다양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해외시장에 접근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FTA인 칠레와의 협정은 남미 시장의 교두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9년 페루와 남미 국가들 가운데 2번째 FTA를 성사시키며 자원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콜롬비아와는 협정을 타결한 상태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타결 및 발효시킨 FTA가 총 15개인데 그 가운데 3개인 20%에 해당하는 FTA가 남미 지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들이 남미 시장을 개척하고 진입하여 이익을 창출하기에는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남미와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패널중력모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남미의 교역에 FTA발효와 국제중재협약 가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중재협약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국제중재를 위한 기본이 갖추어진 것으로 남미

47) 코트라 국가정보 사이트(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2625&cid=48543&categoryId=48543>, 최종접속 : 2016.4.15.).

에 진출하여 국제중재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중재활용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남미에 진출한 기업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분쟁과 관련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계에서의 관심도 지금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다. 제도 및 시장 환경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접근이 있어야만 한다. 일부 남미 국가들 가운데는 법원이 중재를 관리 감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중재판정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법률시장 분석과 기업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이 진입하고 정착하는데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재기관은 중재제도가 잘 활용 되어질 수 있도록 중재기관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 및 중재기관의 노력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기업의 남미 시장에 진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도 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다연·전영서, “중국의 FTA교역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8권, 한국의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4.
- 김상찬·김봉조, “칠레의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제5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 김상호, “FTA하에서의 사적 상사분쟁의 해결”,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
- 박유용, 서세걸,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 박종성, “국내기업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학회지」, 제3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 박종탁, “중남미법 연구실태와 중남미법 번역의 필요성”, 「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제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09.
- 오원석, 황지현,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5.
- 이 철, “중력모형을 적용한 한국무역(1996-2000)의 실증적 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6.

- 임재빈, 정연우, 최대식, 성장환, “해외 신흥 도시개발 참여를 위한 유형 분류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7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 조희문, “중남미에서 중재의 헌법화 현상과 중재발전”, 「중남미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4.
- 최태관, “FTA투자협정과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 하충룡·박원형,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미국법원의 해석”,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
- P. Krugman and M. Obstfeld, *International Economics : Theory&Policy 7th*, Addison Wesley, 2006.
- Wooldridge, *Econometric Analysis on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The MIT Press, 2002.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보고타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 홈페이지
산티아고 조정중재센터 홈페이지

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Arbitration for Promoting Trade in the South American Market

Tae-Kun Ahn
Sung-Ryo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Korea's trade with South America has decreased recent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rbitration on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To this end, w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gravity model of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The gravity model is a research method that is widely used to analyze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gravity model were trade in Korea and South America.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GDP, population, and distanc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In addition, dummy variables were the FTA and whether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or Washington Convention. Joining either Convention indica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As a result, an arbitration system appeared to be effective in increasing trade. Depending on the results it shows the importance of utilizing the system of arbitration in South America. So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arbitration in South America. To companies doing business in South America it provided the implications for an arbitration system there. Also it proposed a method for increasing trade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institutions.

Key Words : South America, Southern Common Market(MERCOSUR), Market Share, Gravity Model, FTA, Arbitration